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건설대행 수탁사업 운영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2025년 9월 8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4 호

군포도시공사 건설대행 수탁사업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지방공기업법」제7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서 대행 또는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군포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수행하는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수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, 조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
1. "수탁사업"이란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중 설계

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한 사업을 말한다.

- 2. "위·수탁 협약서"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공사 간의 책임한계 등을 규정한 계약문서를 말한다.
- 3. "위탁수수료"란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사가 수탁 시행하는 대가로 위탁기관에서 공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말한다.

제4조(사업의 범위) 수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업무
- 2.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(감독)업무
- 3. 보상업무
- 4. 공사 시행업무
- 5. 공사 감리업무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업무 등

제5조(위·수탁 협약체결) 공사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체결하 여야 한다.

- 1.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
- 2. 사업의 종료일
- 3. 사업의 범위
- 4. 업무의 분담 (주민편의 및 행정민원처리 관련 내용 포함)

- 5. 사업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
- 6. 사업비의 정산
- 7. 위탁수수료
- 8. 시설물의 인계·인수
- 9. 하자보수의 책임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6조(수탁사업의 시행) 사장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위·수탁 협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수수료)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산정 요율[별표 1]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위탁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사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부 서	개 발 사 업 부
이	직 위 성 명	개 발 사 업 부 장 최 민 기
안	직 위 성 명	개 발 기 획 팀 장 정 영 도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박 진 영 (390-7788)

[별표 1]

위탁수수료 산정 요율(제7조 관련)

구 분		수수료 요율 (총공사비에 대한 비율)	비고
	100억원 이하	9.0% 이내	 1. "총공사비"라 함은 재료비・노무비・경비・일반관리비・이윤・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총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설계・시공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3.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. 4. 2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하여정할 수 있다. 5. 위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,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. 6. 조사・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.
	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	8.0% 이내	
건설사업대행 	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7.5% 이내	
	500억원 초과	7.0% 이내	
건설사업관리		국토교통부 고시「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」을 적용한다.	
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		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.	
기타 관리사업		상기 건설사업대행 수수료 요율을 준용하여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	

[※] 위탁수수료는 산정요율의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고시의 최근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함.